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28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7. 10.
3. 회부연월일 : 2025.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야간에 취객의 보호·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어 경찰관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취객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경찰관이 물리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형법」 제10조를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가속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음주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¹⁾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6(음주상태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른 형의 감경규정 적용 배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경찰공무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검거된 사람 16,849명 중 주취자는 13,380명으로 79.4%를 차지함.

1)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합계
전체 검거인원	8,225명	8,624명	16,849명
주취자 검거인원	6,383명	6,997명	13,380명
전체 대비 주취자 비율	77.6%	81.1%	79.4%

(자료: 경찰청)

참고로, 2023년 언론 보도에 인용된 경찰관의 발언에 따르면 경찰관이 술에 취한 취객한테 발차기 한두 대 맞는 건 기본이라며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고 함.²⁾

현행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참고로, 종래 재판 실무에서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장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고,⁴⁾ 판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마신 술의 종류와

2) 동아일보 2023년 5월 3일 기사, “112 신고 10건중 8건 술 때문’...공무집행방해 실행은 18% 그쳐”

3)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최형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의 실무상 취급 및 주취범죄의 양형 실무와 개선 방향”, 음주와 양형(양형연구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7면, 2018년

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보인 행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나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인성,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등 병력이 있는지, 정신감정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음.⁵⁾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해진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임.

유사 입법례로는 「소방기본법」 제54조의2⁶⁾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⁷⁾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⁸⁾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있음.⁹⁾ 동 조항에서는 음주

5) 조병구, 「주석 형법」(편집대표: 박상옥, 김대휘) 제10조,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년 제3판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836 판결

6) 「소방기본법」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제54조의2는 2021년 10월 19일 신설됨.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은 2021년 10월 19일 신설됨.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당시에도 있었음(제정 당시에는 법 제19조).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¹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¹¹⁾된 현행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원이 형을 감경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을 통해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실익이 낮을 수 있어 보임.

또한,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사례로는 만취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기절하거나 잠든 상태에 이른 경우¹²⁾ 등이 있는데, 이 같이 「형법」 제10조제1항으로 인정되는 상태(심신상실)에서 경찰관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등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를 범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개정안을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해진 범죄 중 경찰관에

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될 때 신설되었음.

10)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11) 2018년 12월 18일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 (구)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에 감경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지 않음.

12) 최형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의 실무상 취급 및 주취범죄의 양형 실무와 개선 방향”, 음주와 양형(양형연구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4면, 2018년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서만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이외의 국민에 대한 폭행, 협박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감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개정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¹³⁾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내용 중 만취상태 관련 내용]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만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자료: 양형위원회)

13)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1/execution_disturbance_01.jsp#tabs-0

경찰청은 음주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적용대상 범죄에 위험성이 더 높은 「형법」 제144조¹⁴⁾에 따른 특수공무방해 및 그 치사상을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개정안의 조제목을 “(「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로 수정하여 유사입법례인 「소방기본법」 제54조의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등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14)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